C - 52 - 2016

<표 1> 조도기준

작업장의 유형	조도(Lux)
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	55 이상
일반 옥외	33 이상
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	110 이상

5.2 작업장의 조명

- (1) 작업장의 채광 및 조명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7조(채광 및 조명) 및 제8조(조도)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(2) 조명기구를 적절히 배치하고 조명기구에 고장이 생겨서 작업장이 어둡지 않도록 주간에 미리 점검하여 조명장치가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3) 가설 전기를 이용한 조명은 주간에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스위치, 전기콘센트 및 전기패널 등 전기장치는 지정된 자만 관리하도록 하며, 작업시작전 조작요령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.

6. 근로자 복장 및 안전표지 방법과 기준

6.1 근로자 복장 등

- (1)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, 안전화, 작업복, 야광반사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시에는 안전대, 방진마스크, 정전기 방지복 등을 착용시켜야 한다.
- (2) 근로자의 위치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모와 작업복(또는 조끼)에는 적정한 휘도가 있는 반사물(색상-은색, 선의 폭-10mm이상)을 부착하도록 한다.